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참가신청 및 계약서** | **제 12회 한국주얼리페어** | C:\Users\박경수\Desktop\JFK\2014\로고\로고_세로.jpg |
| 2014. 11. 24(월) - 12. 24(수) |
| **Jewelry Fair Korea 2014 전시회 사무국 ㈜2조** | |
| T E L 031 780 2200 E M A I L dodreamtwo@gmail.com | |

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기업정보 | | | ※계약서 제출시 **사업자등록증 사본**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 | | |
| 기업명 | | [국문] | | [영문] | |
| 사업자등록번호 | | |  | 홈페이지 | |
| 주 소 | | | ( - ) | | |
| 대표자명 | | |  | TEL( ) | FAX( ) |
| 담당자 |  | | | 직위 | 부서 |
| 휴대폰 | 직통번호( ) |
| 이메일 | | |  | 전자세금계산서 수신처 이메일 | |
| 업 태 | | | □ 제조 □ 수입 □ 수출 □ 제조/수입 □ 제조/수출 □ 국내유통 | | |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전시품 정보 | |  | | |
| 품목분류 | □ Fine Jewelry | | □ Fashion jewelry | □ Gemstones |
| □ Silver Jewelry | | □ Diamonds | □ Pearls |
| □ Jade | | □ Accessories | □ Watch & Clock |
| □ Tools & Equipment | | □ Display Case □ Publication & Others ( ) | |
| 전시품소개 |  | | | |
|  | | | |

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신청 부스종류 및 참가비용 | | | \*부대시설(전기,전화,인터넷 등) 비용은 별도 | | | |
| **부스종류** | | **부스비** |  | **부스수** |  | **총비용** |
| 기본부스 | (9㎡) | 2,400,000원 | × |  | = |  |
| 스탠다드부스 | (9㎡) | 2,800,000원 | × |  | = |  |
| 프리미엄부스(1) | (9㎡) | 3,200,000원 | × |  | = |  |
| 프리미엄부스(2)\_개방 | (18㎡) | 5,800,000원 | × |  | = |  |
| 프리미엄부스(2)\_폐쇄 | (18㎡) | 5,800,000원 | × |  | = |  |
| 독립부스 | (9㎡) | 2,000,000원 | × |  | = |  |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참가비 납입처 |  |  |
| 은행명 : 우리은행 | 계좌번호 : 0000-111-000000 | 예금주 : (주)2조 |

|  |  |
| --- | --- |
| **참가규정 및 계약조건(이면수록)을 수락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동봉,**  **상기와 같이 Jewelry Fair Korea 2014에 참가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합니다.** | **년 월 일** |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계약담당자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(인)** | **대표이사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(인)** | **사무국 확인란** |
|  |
| **1. 본 계약서에 날인한 상기인은 참가업체를 대표하여 본 계약서를 이행할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었음을 보증합니다.**  **2. Jewelry Fair Korea 2014 사무국의 확인 날인이 없는 계약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.** | |

|  |  |
| --- | --- |
| **전시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** | C:\Users\박경수\Desktop\JFK\2014\로고\로고_세로.jpg |

|  |
| --- |
| **제1조 용어의 정의** |

① "전시자"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계약서 및 신청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,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.

② "전시회"라 함은 "2014 한국주얼리페어"를 말한다.

③ "주최자"라 함은 "한국무역협회"를 말한다.

|  |
| --- |
| **제2조 참가신청 및 계약** |

①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시회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전시자가 참가신청서를 작성, 제출하고 참가비의 50%를 납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할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.

③ 전시자는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기타 제출서류 내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, 즉시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.

|  |
| --- |
| **제3조 전시부스 배정** |

① 주최자는 계약금 납입순서, 참가규모 및 전시품 특성,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참가업체의 전시위치를 배정한다.

② 주최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장치물 설치 전 전시자에게 할당된 공간의 위치 또는 크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
|  |
| --- |
| **제4조 전시공간 사용** |

① 전시공간의 사용시간은 오전 08:00~20:00까지로 하며 사용 시간외 추가작업이 필요한 때에는 시간외 사용료를 사용자가 납부 하여야 한다.

※시간외 사용비용 산출 : 작업시간 X 1, 0 0 0, 0 0 0원(부가세별도)

② 전시자는 전시기간동안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
③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,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. 주최자는 동 사실을 전시자에게 3회 고지한 후 불응 시 강제로 철거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 니하며,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 또한, 전시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타전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전시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.

④ 전시자는 전시회 종료 전에 전시품을 반출할 수 없다.

⑤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⑥ 전시자는 타 전시자나 방문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품을 운영, 관리하여야 한다. 피해를 줄 경우(음 향기기 사용, 이벤트 등), 주최자는 전시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.

⑦ 주최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전시품에 대해 반출을 명할 수 있다.

|  |
| --- |
| **제5조 현장 직매행위** |

① 전시자에게는 현장직매 전시품에 수반되는 관세나 세금 납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.

② 현장직매를 원하는 전시자는 사전 신청서를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|  |
| --- |
| **제6조 납입조건** |

①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후 일주일 이내 참가비의 50%를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, 잔금 50%는 2014년 3월 28일 까지 모두 납부해야 한다.

② 전시자가 참가비를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
③ 전시자가 참가비를 미납했을 경우, 주최자는 전시자의 전시품을 압류할 수 있다.

|  |
| --- |
| **제7조 위약 및 해약** |

① 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또는 규모축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 단,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고, 잉여 시 반환한다.

**\*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소 : 취소분에 대한 참가비의 50%를 위약금으로 납부**

**\* 2014년 1월 1일 이후 취소 : 참가비의 전액을 위약금으로 납부**

②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|  |
| --- |
| **제8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** |

①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의 불가 항력인 경우 또는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단 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. 이 경우,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|  |
| --- |
| **제9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** |

①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,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.

② 전시자는 전시공간의 바닥, 천장, 기둥, 면적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,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|  |
| --- |
| **제10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** |

①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해체 하여 반출하여야 하며, 반출을 지연할 경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전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
|  |
| --- |
| **제11조 전시장 경비, 위험부담 및 보험** |

① 주최자는 전시자 및 참관객의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, 안전에 위협을 주는 장치와 전시물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.

②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. 단,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,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,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.

③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, 도난 파손, 기타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.

|  |
| --- |
| **제12조 방호규칙** |

①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.

②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|  |
| --- |
| **제13조 보충규정** |

①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원활한 전시운영을 위하여 전시회 참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
②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,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전시자는 코엑스(COEX)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|  |
| --- |
| **제14조 분쟁해결** |

①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 중재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해결한다.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.